

투자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유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리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3년 7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7월 1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모집(매출)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02-2168-7900, <http://www.yurieasset.co.kr>)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표지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법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정리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클래스)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96603 |
| A | 96604 |
| C1 | 96605 |
| C2 | 96606 |
| C3 | 96607 |
| C4 | 96608 |
| C-e | 96609 |
| W | A3339 |
| F | A400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 | |
|---------------|---------|-------------------------------------|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 |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 | 종류형 |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클래스)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96603 |
| A | 96604 |
| C1 | 96605 |
| C2 | 96606 |
| C3 | 96607 |
| C4 | 96608 |
| C-e | 96609 |
| W | A3339 |
| F | A4005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0.10.29 | 최초설정 |
| 2011.01.31 | 신탁계약 변경 : 모자형으로 변경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2011.05.04 | 신탁계약 변경 : Class W 추가 |
| 2011.05.27 | 신탁계약 변경 : Class F 추가 등 |
| 2011.11.10 | ① 결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② 기타 위험등급 분류기준 업데이트 및 투자신탁 관련 비용 내용 추가 등 |
| 2012.09.13 | 책임운용인력 변경 (김현욱→이준혁) |
| 2013.01.18 |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등 |
| 2013.07.16 | 부책임용인력 변경 의결권행사공시방법 등 수시공시 내용 보완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운용현황 등의 내용 갱신 등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용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보다 긴 임의의 기간을 투자기간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02-2168-7900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13.6.30 기준, 단위: 개, 억)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이준혁 | 1970 | 책임 운용인력 | 36 | 6,390 | - 고려대 정경대학 통계학과 - '95.12~'00.05. 코리안리 - '00.05~'12.08. 동부자산운용 - '12.08~현재. 유리자산운용 |
| 조용화 | 1975 | 부책임 운용인력 | | | - 연세대 경영학과 - '01.01~'07.01. 대신증권 - '07.01~'12.11. 삼성자산운용 - '13.03~현재. 유리자산운용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개수(1개), 규모(441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해당 운용본부에서 운용 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 이름 | 직책 | 운용 기간 |
|-----|---------|---------------------------------------|
| 김현욱 | 책임운용인력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2010.10.29)~ 2012.09.17 |
| 이준혁 | 책임운용인력 | 2012.09.18 ~ 현재 |
| 박정원 | 부책임운용인력 | 2011.01.31 ~ 2013. 7. 16 |
| 조용화 | 부책임운용인력 | 2013. 7. 16 ~ 현재 |

주) 2013년 7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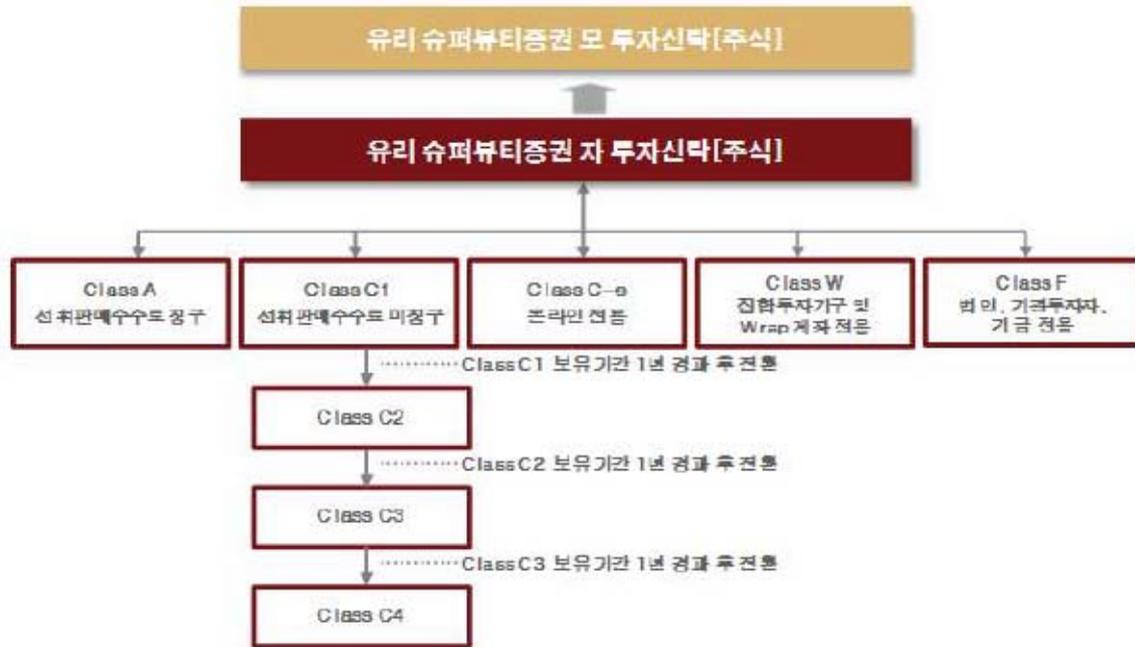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형(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별 판매보수 차등 적용)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 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행위는 종류 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 종류 | 가입자격 | 최초설정일 | 구 분 | | 부과비율 |
|------|------------------------------------|------------|----------------|----------|--|
| A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2011.3.8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이내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85% |
| C1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2010.10.29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판매회사 | 1.50% | | | | |
| C2 | C1클래스 수익증권 | 2011.11.01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신탁업자 | 0.03%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종류 | 가입자격 | 최초설정일 | 구 분 | | 부과비율 |
|----------|--|------------|----------------|----------------|--|
| | 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 | | | | 판매회사 | 1.25% |
| | | | | 신탁업자 | 0.03%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 | |
| C3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2012.11.01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99% |
| 신탁업자 | 0.03%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 | |
| C4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89% |
| 신탁업자 | 0.03%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 | |
|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2011.3.10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 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85% |
| 신탁업자 | 0.03% | | | | |

| 종류 | 가입자격 | 최초설정일 | 구 분 | | 부과비율 |
|----------|--|-------|------------------|----------|--|
| | | | | |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W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 -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00% |
| 신탁업자 | 0.03%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 | |
| F | 법인 또는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 - | 수수료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
| | | | 투자신탁보수 (연간,%) | 집합투자업자 | 0.70% |
| | | | | 판매회사 | 0.30% |
| 신탁업자 | 0.03%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5% | | | | |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주2) 투자신탁보수는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 3개월마다 지급합니다.

주3)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4)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해 환매청구 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5)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등적용된 판매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외에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내용 중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산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구분 |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산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대상 | 주식 60%이상, 채권 40%이하, 어음 40%이하 등 |
|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되 주식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p>[포트폴리오 구성]</p> <p>1. 핵심 컨셉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컨셉이란 추세적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업종이나 기업군을 의미합니다. * 유망 핵심 컨셉 (2011.01 현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의 소비 증대에 따른 수혜 업종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태양광, LED 등 관련 종목 -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시장 이노베이션에 따른 관련 수혜주 <p>2. 소수의 핵심종목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0 개 내외 종목으로 집중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p>3. 상승여력 가중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재가치 분석 후 대상 종목들에 대한 사전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가격상승여력(Upside Potential)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투자비중은 시총방식이나 동일비중이 아닌 등급에 따라 가격상승 여력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부여합니다. (1등급: 8% 2등급: 5% 3등급 : 3%수준) <p>[운용전략]</p> |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 <p>* 매수대상 종목은 철저한 리서치(Bottom-up)를 통하여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대비 충분히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투자합니다.</p> <p>* 목표 주가 달성 시 이익 실현 및 적극적 종목 교체를 추구합니다.</p> <p>[기타 자산운용 전략]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한도 내에서 국내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성 자산(단기대출 등)에 투자 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도 일부 투자 가능합니다.</p> <p>[위험 관리 체계] - 운용역 개인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p> <p>[비교지수(참조지수)] $(\text{KOSPI지수의 일별변동률} \times 90\%) + (\text{CD 91일물의 일별수익률} \times 10\%)$</p>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 100% 이하 투자하여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자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유리슈퍼부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이하 |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되, 벤치마크, 스타일, 기업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증권모투자신탁 |
| (2) 단기대출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 (3) 금융기관에의 예치 | |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 (4)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주식 | 60% 이상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
| (2) 채권 | 40% 이하 |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 |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3) 자산유동화 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 어음 등 |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다) |
| (5)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 (6) 집합투자증권 | 4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7)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 |
| (8)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 |
| (9) 증권의 차입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 |
| (10) 단기대출 |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
| (11) 금융기관에의예치 |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12) 고유재산거래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 등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

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
| (1) 이해관계 인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 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1) 이해관계 인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다만, 집합투자업 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 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 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2)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 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 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 자할 수 있음.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 |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 월간 (본문 만 해당) |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 <p>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 |
| (3)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4)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투자 | <p>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5)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 | - |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 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 |
| (6) 후순위채권투자 | 투자신탁자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7) 투자한도 초과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9조 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다. 기타 제한 사항

| 구분 | 제한의 내용 |
|----------------|---|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의한 사유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 금전차입등의 제한 |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p>위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p> |

| 구분 | 제한의 내용 |
|----|---|
| | 위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가.투자대상의 단기대출은 제외합니다)하여서는 안됩니다.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 100% 이하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 방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1) 모자형 구조의 특성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방안은 당해 투자신탁에 전이됩니다.

(3) 비교지수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비교지수의 1일 변동률=KOSPI 지수의 일별 변동률×90%+CD 91일물의 일별 수익률×10%]의 변동률을 자체적으로 지수화한 값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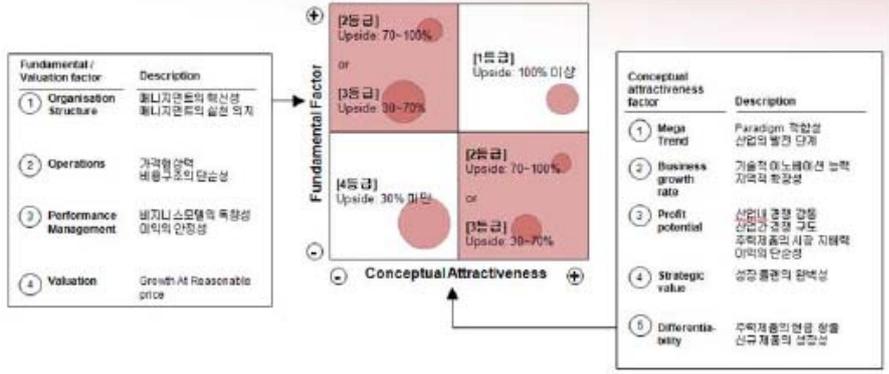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

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구분 |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투자목적 | <p>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되 주식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목적인 바 대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
| 투자전략 | <p>[포트폴리오 구성]</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되, 벤치마크, 스타일, 기업규모 등에 관계 없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투자수익의 극대화 추구합니다.</p> <div data-bbox="391 974 1284 1444" style="text-align: center;"> </div> <p>1. 핵심 컨셉 발굴 · 핵심 컨셉이란 추세적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업종이나 기업군을 의미합니다.</p> <p>[핵심컨셉발굴기준]</p> |



• 유망 핵심 컨셉 (2011.01 현재기준)

-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의 소비 증대에 따른 수혜 업종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관련한 태양광, LED 등 관련 종목
-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시장 이노베이션에 따른 관련 수혜주

※ 상기에 제시된 유망핵심컨셉은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향후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소수의 핵심종목 투자

- 10 ~20 개 내외 종목으로 집중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3. 상승여력 가중투자

- 기업 내재가치 분석 후 대상 종목들에 대한 사전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가격상승여력(Upside of Potential)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투자비중은 시총방식이나 동일비중이 아닌 등급에 따라 가격상승 여 력이 더 높다고 판단 되는 종목에 더 높은 투자 비중을 부여합니다.
(1등급: 8%, 2등급: 5%, 3등급 : 3% 수준)

[운용전략]

- 매수대상 종목은 철저한 리서치(Bottom-up)를 통하여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대비 충분히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투자합니다.
- 목표 주가 달성 시 이익 실현 및 적극적 종목 교체를 추구합니다.

※ 상향식(Bottom-up)투자 : 개별 주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에 기초하여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

[기타 자산운용 전략]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한도 내에서 국내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성 자산(단기대출 등)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에도 일부 투자 가능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운용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위험관리체계]

- 운용역 개인의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

| | |
|-------------|---|
| | <p>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며,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운용업 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관리본부에서 각종 법령 및 규정, 지침, 내규가 지켜지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으로 펀드의 실적평가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
|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 <p>[비교지수(참조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SPI 변동률과 CD91일물의 수익률을 0.90대 0.10의 비율로 일별 가중 합성하여 산출되는 자체 생산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여 사용합니다. (비교지수의 1일 변동률=KOSPI 지수의 일별 변동률×90% + CD 91일물의 일별 수익률 × 10%)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코스닥 시장의 성과를 반영하지 않지만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산출방식 등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및 집합투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yurieasset.c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유리슈퍼뷰티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이러한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만큼 당해 투자신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 구분 | 수익구조 |
|--------------------|--|
| 유리슈퍼뷰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특성 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시세의 등락 및 배당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평가손익 등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식의 시세는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급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인은 경제·정치·자연·사회·문화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대상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할수록, 투자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클수록 주식의 시세는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투자신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투자신탁 고유의 운용전략이 유효하게 목표를 달성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투 |

| 구분 | 수익구조 |
|----|---|
| | <p>자신탁의 성과는 비교지수의 성과를 상회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교지수의 성과에 미달하게 됩니다. 운용자의 재량에 따라 적극적인 초과수익전략을 구사하는 특성 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가 비교지수 성과에 일정한 제한 없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자본이득, 배당수입, 이자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p>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으로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항상 급격히 변화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주식의 시세 변화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파생상품, 주식관련채권(전환사채 등) 등과 같이 그 가격이 주가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주식의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거래상대 |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예금, 단기대출 등의 자산을 발행하거나 그 |

| 구분 | 주요 내용 |
|----------------------|---|
| 방 및 신용 위험 | 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관련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유동성 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
| 금리변동 위험 |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
| 매매비용 과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표의 달성 및 운용전략의 실행을 위해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는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합니다. 빈번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매매의 결과로 인한 손익이 매매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거나 매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자산의 시장가격이 변동할 경우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증권대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운용 관련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거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며 레버리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분 | 내용 |
|---------|--|
| 집중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소수 주식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다수의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보다 개별 종목 변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
| 비체계적 위험 | 이 투자신탁의 고유한 운용전략 및 목표의 특성과 운용자의 재량에 의해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비교지수의 포트폴리오)와 상이하게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은 시장의 평균적인 위험 외에 포트폴리오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즉 비체계적인 위험을 추가로 수반하며 이는 시장평균(비교지수) 성과에 미달하는 성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내용 |
|-----------|--|
| 환매가격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 보다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기준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가격의 하락을 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
| 환매연기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보유하는 수익증권에 대해 심각한 환금성의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의도한 투자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해지 과정에서 투자신탁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관련 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수익자의 지위, 투자신탁재산의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 |

| 구분 | 내용 |
|--------------|--|
| | 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 펀드규모 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공정가액 산정위험 |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이나 예금과 같은 시가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정가액이나 장부가 등을 반영하여 신탁재산의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수익자간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권리행사 위험 |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 하에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중지 위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 등의 자산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 위험 | 일시에 집중적인 대량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가 방해받거나 자산의 처분 자체가 처분가격 및 미처분 자산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운용 교란 위험 | 투자신탁에 대한 설정 및 환매의 청구는 운용전략 상의 의도와 무관하게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거래를 유발하여 효과적인 운용전략의 구사를 방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격형성에 영향을 주어 투자신탁의 성과에 크고 작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이 투자신탁은 그 시세가 항상 변동하여 높은 위험을 지니는 투자대상인 국내주식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급격한 시세변동에 노출되고 큰 규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니므로 유리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을 5등급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수준인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의 투자가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유리자산운용(주)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설명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 (최대손실가능 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시장 대표성을 지니거나 광범위한 분산투자를 추구하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및 인핸스드 인덱스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간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설명 |
|------|----------|---|
| | |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 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③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④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해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유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판매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통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 | 펀드코드 | 가입자격 |
|-----|-------|--|
| A | 96603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C1 | 96604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C2 | 96605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C3 | 96606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C4 | 96607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C-e | 96608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
| W | A3339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
| F | A4005 | 법인 또는 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용 수익증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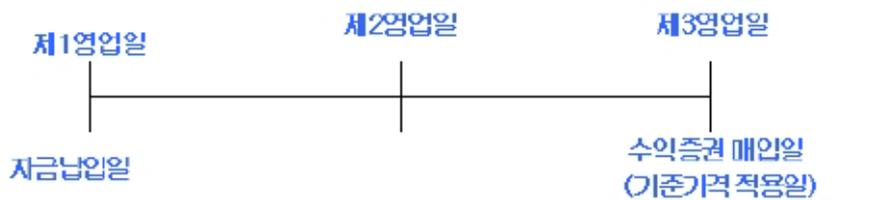
(가)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 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매입_기준가격

주1) 수익증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종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 포함 제 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증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나)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 포함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증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제 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_기준가격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주2)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

| 구분 | 종류별 부담비율 | | | | | | | | 비고 (부담시기) |
|----------------------------|---|----|----|----|----|-----|---|---|--------------|
| | A | C1 | C2 | C3 | C4 | C-e | W | F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 | | | | | | 환매시 |

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해 환매청구 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등으로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상기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 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일부 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일부 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이하 "정상 자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차회의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환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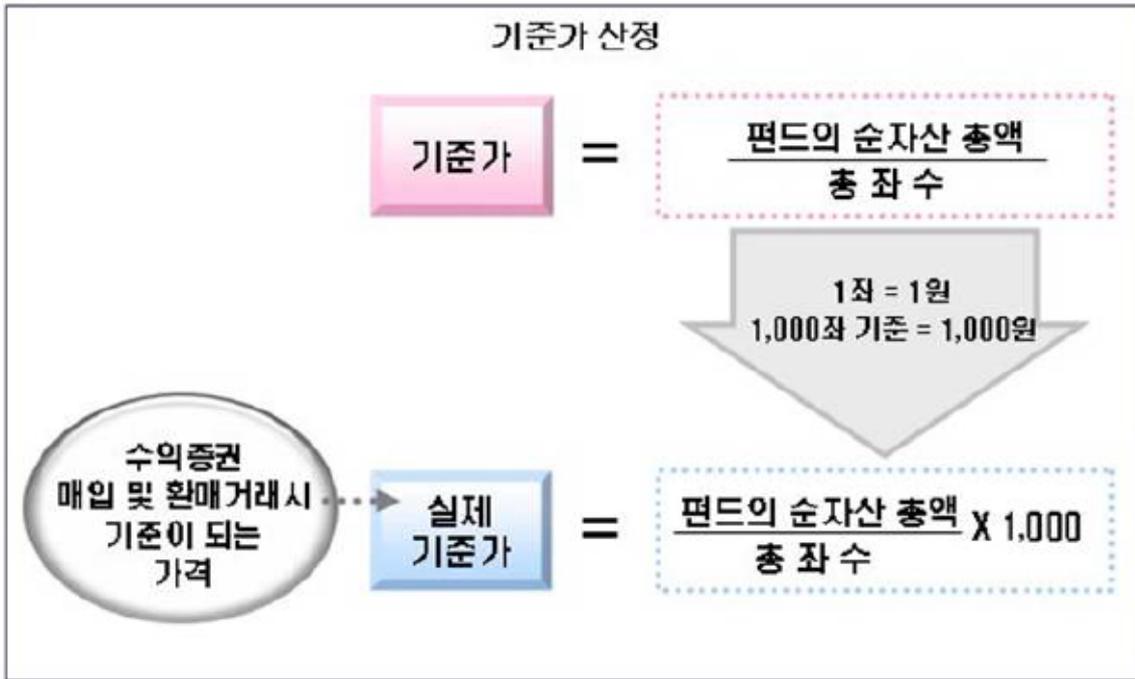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 용 |
|------------------|--|
|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판매사 영업점포,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 모자형 투자신탁의 |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

| 구분 | 내 용 |
|----|-------------------------------------|
| 경우 |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 구분 | 평가원칙 |
|----------|--|
| 시 가 | <p>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공정가 액 |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p> |

| 구분 | 평가원칙 |
|----|---|
| | 로 평가하여야 함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1)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 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
| 2)예상배당금 |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증권사추정 예상배당금과 회사가 추정한 예상배당금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결정 |
| 3)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 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4)시가형성 전 상장신주식 | ①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 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의 평가는 구주식의 최종시가 로 평가. 다만, 전환 또는 행사기준일을 영업년도말로 보는 경우에는 구주 식의 평가액에서 배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②공모신주식은 최초로 시가가 형성되는 날까지 취득가액으로 평가 ③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비상장주식은 해지금 지급일에 지급일 전 일의 평가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리 함 ④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시 신주인수권은 해지금 지급일에 전일의 평 가액에서 신주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이체처 리 함 |
| 5)장내파생상품 |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6)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 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하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한 가격 |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7)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 |
| 8)상장채무증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함) |
| 9)비상장채무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의 상장채무증권 평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
| 10)외화표시 상장주식/ 상장채무증권 | 당해 투자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11)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2)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비상장 외화표시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매각제한 투자 자산 등 |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곤란하여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 2.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 3. 기준가 산출시점 현재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외국의 최종시가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외화표시자산 4. 상기 1)~13)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위원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간사 : 평가담당부서장(주무 부서장) |
| 회의소집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 기능 | 다음의 사항을 논의 및 결정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사항 |

| 구분 | 주요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의결방법 |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름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A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는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C1 | 가입자격 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C2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명칭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C3 |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 -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C4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동전환에 의해 매입하는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C-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온라인전용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W |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 법령에 의한 집합투자 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 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F | 법인 또는 법시행령 제1 0조제2항 및 금융투자 업규정 제1-4조에서 정 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 금 전용 수익증권 | - |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 익금의 30% | - |
| 부과기준 | | - | - | 이익금 | - |

주 1)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해 환매청구 하는 경우 또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 2)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하는 Class A 수익증권에 한하여 부과되며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차등적용된 판매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및 각 판매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이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기타비 용 | 총 보수 ·비용 |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 투자기구 보수 포함) | 증권 거래비용 |
| A | 0.70 | 0.85 | 0.03 | 0.015 | 0.004 | 1.599 | 1.612 | 0.446 |
| C1 | 0.70 | 1.50 | 0.03 | 0.015 | 0.009 | 2.254 | 2.269 | 0.508 |
| C2 | 0.70 | 1.25 | 0.03 | 0.015 | 0.004 | 1.999 | 2.012 | 0.426 |
| C3 | 0.70 | 0.99 | 0.03 | 0.015 | - | 1.735 | 1.735 | - |
| C4 | 0.70 | 0.89 | 0.03 | 0.015 | - | 1.635 | 1.635 | - |
| C-e | 0.70 | 0.85 | 0.03 | 0.015 | 0.003 | 1.598 | 1.611 | 0.440 |
| W | 0.70 | 0.00 | 0.03 | 0.015 | - | 0.745 | 0.745 | - |
| F | 0.70 | 0.30 | 0.03 | 0.015 | - | 1.045 | 1.045 | -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 | 매3개월 후급 | 매 3개월 후급 |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 합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1.10.29 ~ 2012.10.28]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기간 : 2011.10.29 ~ 2012.10.28]

주3) 증권 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7) 투자신탁 관련 비용 :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 비용,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 비용,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원)

| 종류 | 1년 | 3년 | 5년 | 10년 |
|-----|-----|-----|-------|-------|
| A | 263 | 615 | 1,003 | 2,156 |
| C1 | 230 | 641 | 1,039 | 2,220 |
| C-e | 163 | 515 | 903 | 2,056 |
| W | 76 | 241 | 422 | 960 |
| F | 107 | 338 | 592 | 1,347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 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매매수수료 등의 거래비용은 비용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C1의 경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현황]
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없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2)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

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5)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 단계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과세관련 유의사항 안내-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주1)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2 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제 1 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요약대차대조표 | | | |
|----------|-------------------|---------------------|---------------------|
| 구분 | 반기 (2013.4.28) | 제2기 (2012.10.28) | 제1기 (2011.10.28) |
| 운용자산 | 3,893,728,068 | 8,413,612,933 | 12,277,203,811 |
| 유가증권 | 3,884,623,844 | 8,384,986,005 | 12,111,078,552 |
| 현금 및 예치금 | 9,104,224 | 28,626,928 | 66,125,259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100,000,000 |
| 기타자산 | 1,838,075,929 | 20,052,680 | 178,704 |
| 자산총계 | 5,731,803,997 | 8,433,665,613 | 12,277,382,515 |
| 기타부채 | 1,846,251,849 | 42,450,524 | 1,235,792,801 |
| 부채총계 | 1,846,251,849 | 42,450,524 | 1,235,792,801 |
| 원본 | 3,773,160,318 | 9,386,079,305 | 11,041,589,714 |
| 이익조정금 | 112,391,830 | -994,864,216 | 0 |
| 자본총계 | 3,885,552,148 | 8,391,215,089 | 11,041,589,714 |

(단위: 원,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 구분 | 반기 ('12.10.29~'13.4.28) | 제2기 ('11.10.29~'12.10.28) | 제1기 ('10.10.29~'11.10.28) |
| 운용수익 | 528,893,159 | -1,147,605,573 | 554,861,304 |
| 이자수익 | 86,515 | 1,534,086 | 6,459,991 |
| 배당수익 | 0 | 0 | 48,599,750 |
| 매매/평가차익(손) | 528,778,536 | -1,149,523,967 | 498,583,389 |
| 기타수익 | 28,108 | 384,308 | 1,218,174 |
| 운용비용 | 67,052,096 | 221,253,650 | 230,954,147 |
| 관련회사보수 | 66,962,636 | 220,692,690 | 229,264,217 |
| 매매수수료 | 0 | 3,920 | 50,560 |
| 기타비용 | 89,460 | 557,040 | 1,639,370 |
| 당기순이익 | 461,841,063 | -1,368,859,223 | 323,907,157 |
| 매매회전율 | 0 | 0 | 226.27 |

주)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기간 | 기간초잔고 | | 재투자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잔고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설정 좌수 | 설정 금액 | 환매 좌수 | 환매 금액 | 좌수 | 금액 |
| A | 2011/03/08~ 2011/10/28 | 0 | 0 | 0 | 0 | 11 | 11 | 3 | 3 | 8 | 7 |
| | 2011/10/29~ 2012/10/28 | 8 | 7 | 0 | 0 | 3 | 2 | 3 | 3 | 7 | 6 |
| | 2012/10/29~ 2013/06/30 | 7 | 6 | 0 | 0 | 1 | 1 | 2 | 2 | 6 | 5 |
| C-e | 2011/03/10~ 2011/10/28 | 0 | 0 | 0 | 0 | 2 | 2 | 0 | 0 | 2 | 2 |
| | 2011/10/29~ 2012/10/28 | 2 | 2 | 0 | 0 | 1 | 1 | 1 | 1 | 1 | 1 |
| | 2012/10/29~ 2013/06/30 | 1 | 1 | 0 | 0 | 0 | 0 | 1 | 1 | 1 | 1 |
| C1 | 2010/10/29~ 2011/10/28 | 30 | 30 | 0 | 0 | 77 | 87 | 6 | 8 | 101 | 113 |
| | 2011/10/29~ 2012/10/28 | 101 | 113 | 12 | 12 | 1 | 1 | 114 | 114 | 0 | 0 |
| | 2012/10/29~ 2013/06/3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C2 | 2011/11/01~ 2012/10/28 | 33 | 33 | 0 | 0 | 79 | 81 | 26 | 24 | 85 | 77 |
| | 2012/10/29~ 2013/06/30 | 85 | 77 | 0 | 0 | 0 | 0 | 85 | 79 | 0 | 0 |
| C3 | 2012/11/01~ 2013/06/30 | 30 | 30 | 0 | 0 | 48 | 49 | 62 | 64 | 16 | 16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

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2013. 6.30 현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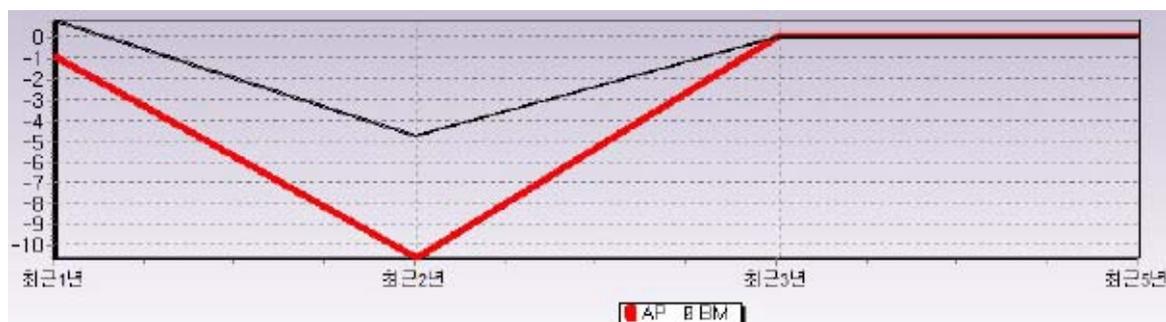
| 구분 | 최근1년 ('12.7.1~ '13.6.30) | 최근2년 ('11.7.1~ '13.6.30) | 최근3년 ('10.7.1~ '13.6.30) | 최근5년차 ('08.7.1~ '13.6.30) | 설정일 이후 ('10.10.29~ '13.6.30) |
|-------|--------------------------------|--------------------------------|--------------------------------|---------------------------------|-------------------------------------|
| 종류A | -1 | -10.66 | - | - | -7.99 |
| 비교지수 | 0.83 | -4.76 | - | - | -1.84 |
| 종류C1 | -1.88 | -11.96 | - | - | -1.85 |
| 비교지수 | 0.83 | -4.76 | - | - | -0.3 |
| 종류C2 | -1.21 | - | - | - | -7.07 |
| 비교지수 | 0.83 | - | - | - | -0.87 |
| 종류C3 | - | - | - | - | -2.81 |
| 비교지수 | - | - | - | - | -3.11 |
| 종류C-e | -1 | -10.65 | - | - | -8.09 |
| 비교지수 | 0.83 | -4.76 | - | - | -2.25 |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 × 90%) + (CD91일 수익률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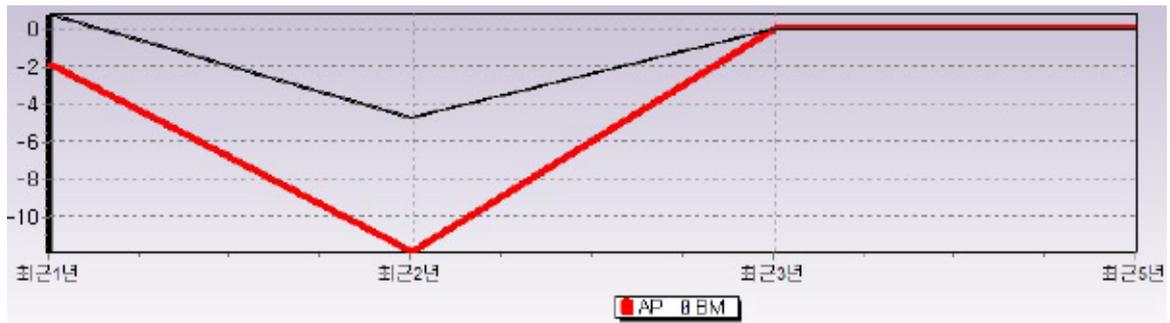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종류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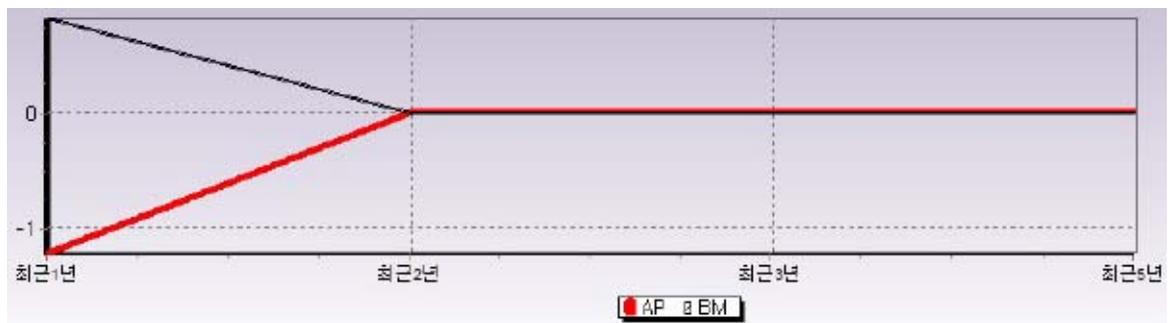
연평균a 20130630

종류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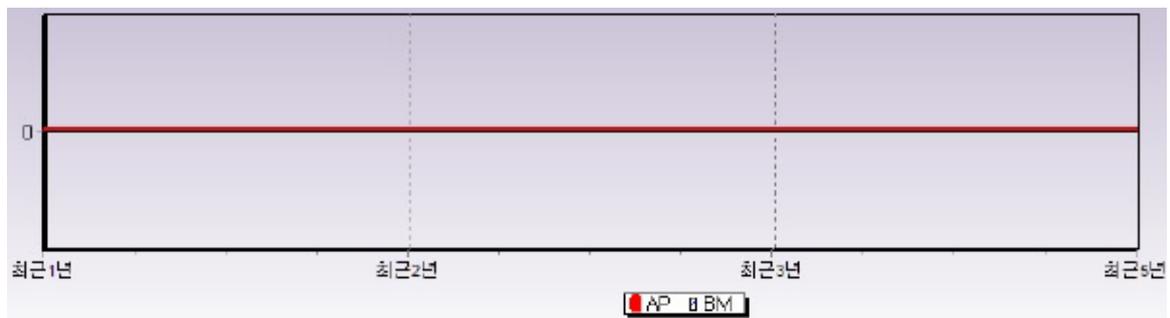
연평균c1 20130630

종류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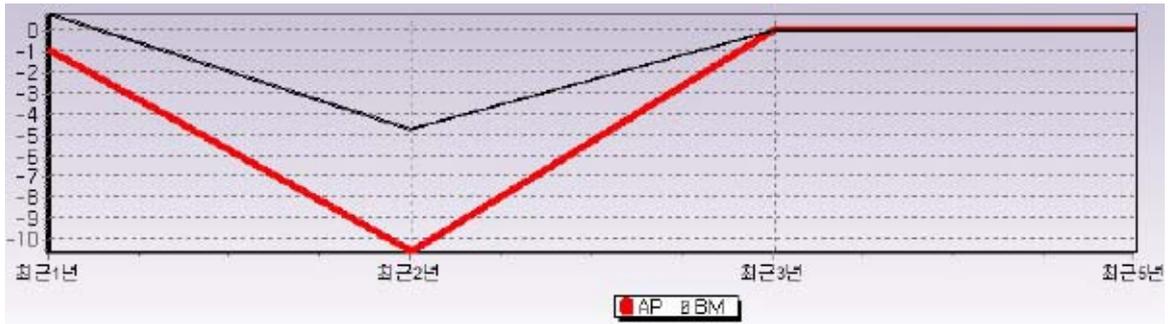
연평균c2 20130630

종류C3



연평균c3 20130630

종류C-e



연평균 c-e 2013063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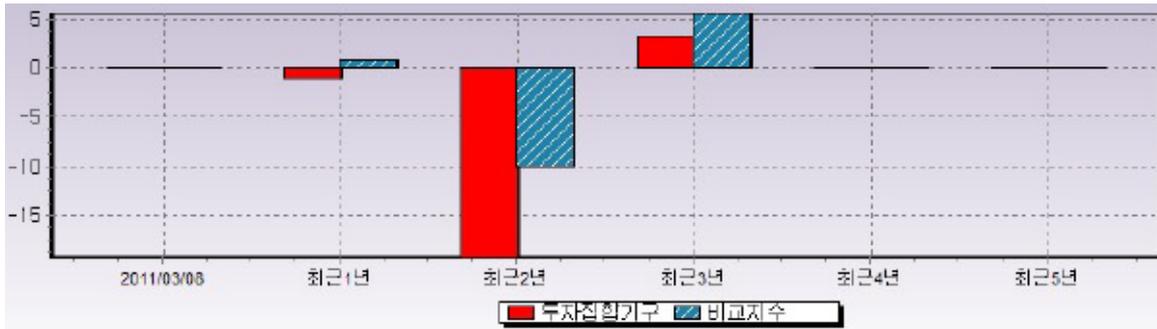
(세전 기준, 2013. 6. 30 현재, 단위: %)

| 구분 | 최근1년차 ('12.7.1~ '13.6.30) | 최근2년차 ('11.7.1~ '12.6.30) | 최근3년차 ('10.7.1~ '11.6.30) | 최근4년차 ('09.7.1~ '10.6.30) | 최근5년차 ('08.7.1~ '09.6.30) |
|-------|----------------------------------|----------------------------------|----------------------------------|----------------------------------|----------------------------------|
| 종류A | -1 | -19.4 | 3.34 | - | - |
| 비교지수 | 0.83 | -10.04 | 5.62 | - | - |
| 종류C1 | -1.88 | -21.03 | 22.79 | - | - |
| 비교지수 | 0.83 | -10.04 | 9.37 | - | - |
| 종류C2 | -1.21 | -10.41 | - | - | - |
| 비교지수 | 0.83 | -2.25 | - | - | - |
| 종류C3 | -2.81 | - | - | - | - |
| 비교지수 | -2.07 | - | - | - | - |
| 종류C-e | -1 | -19.39 | 3.11 | - | - |
| 비교지수 | 0.83 | -10.04 | 4.61 | - | - |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 × 90%) + (CD91일 수익률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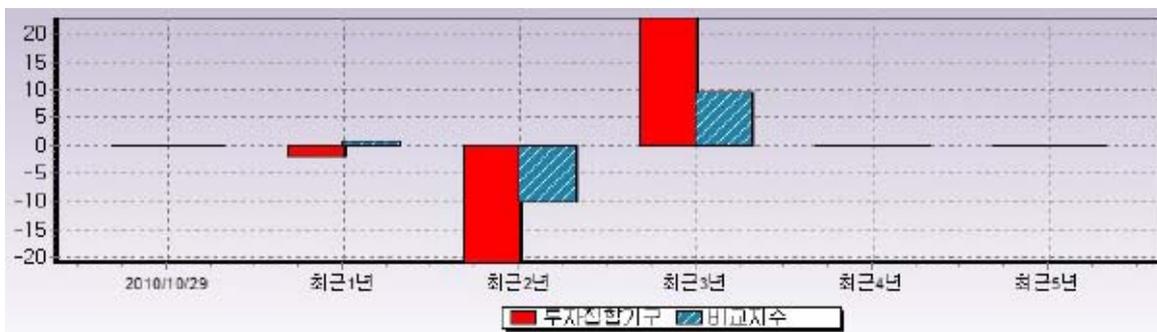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류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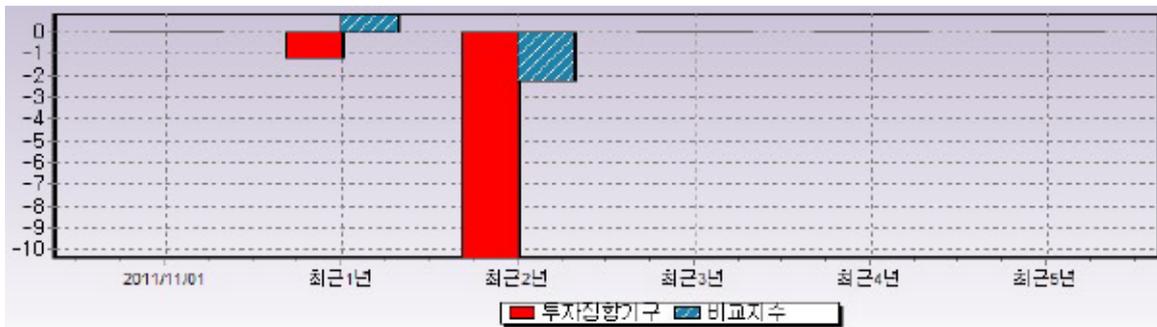
연도별 a 20130630

종류 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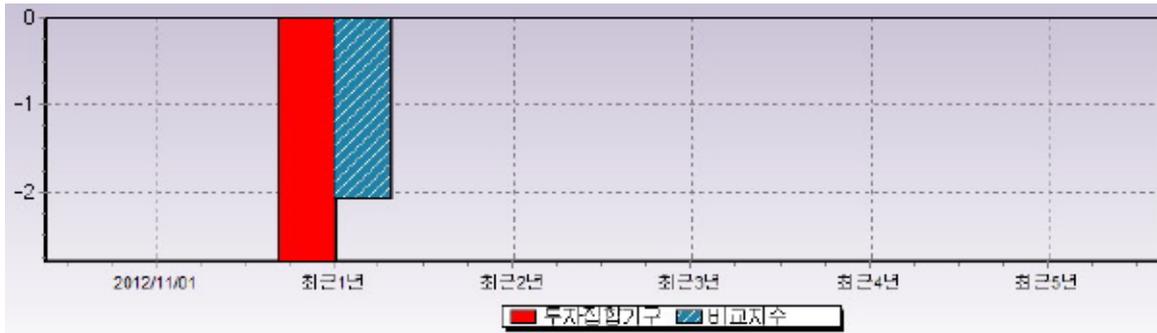
연도별 c1 20130630

종류 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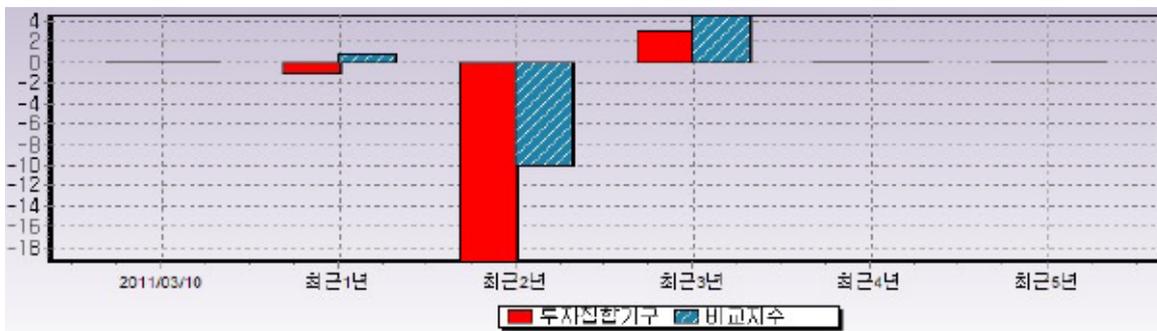
연도별 c2 20130630

종류 C3



연도별 c3 20130630

종류 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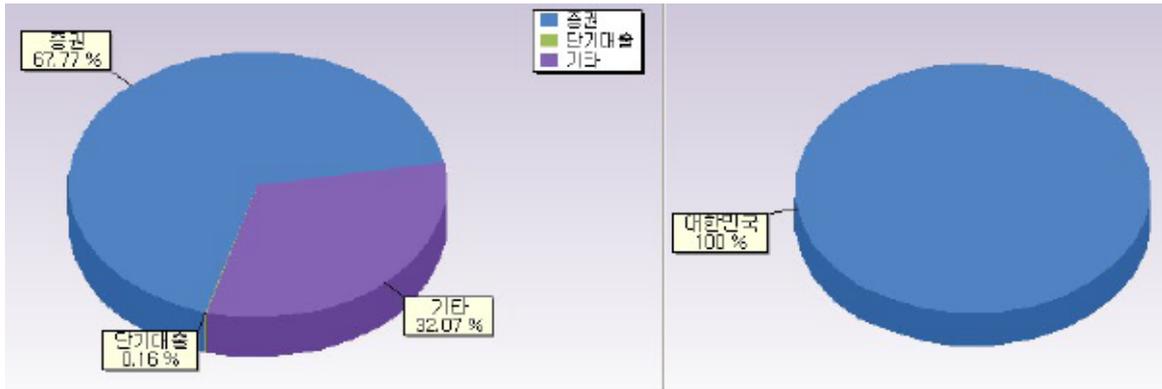
연도별 c-e 20130630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3. 4. 28 기준, 단위: 억,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0 | 0 | 0 | 39 | 0 | 0 | 0 | 0 | 0 | 0 | 18 | 57 |
| 비중 | 0 | 0 | 0 | 68 | 0 | 0 | 0 | 0 | 0 | 0 | 32 | 100 |
| 자산합계 | 0 | 0 | 0 | 39 | 0 | 0 | 0 | 0 | 0 | 0 | 18 | 57 |
| 비중 | 0 | 0 | 0 | 68 | 0 | 0 | 0 | 0 | 0 | 0 | 32 | 100 |

주)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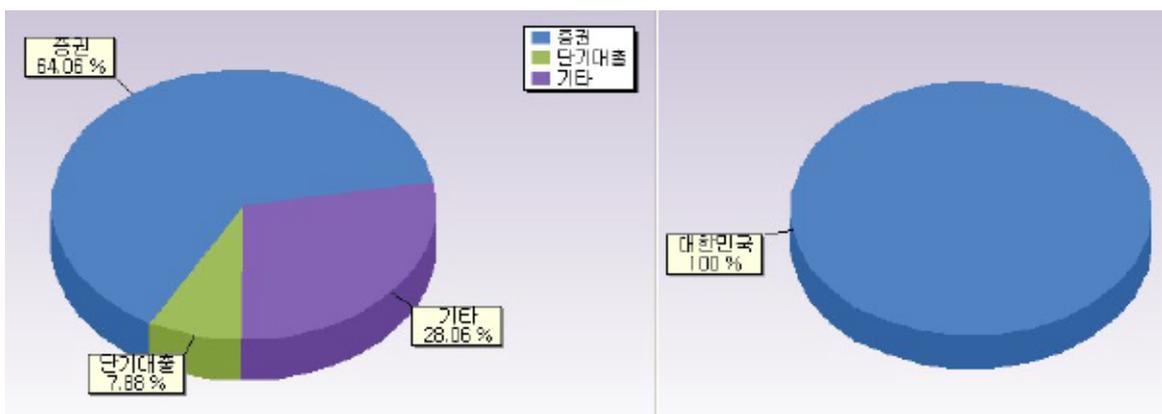
자펀드 자산구성현황 20130428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13. 4. 28 기준, 단위: 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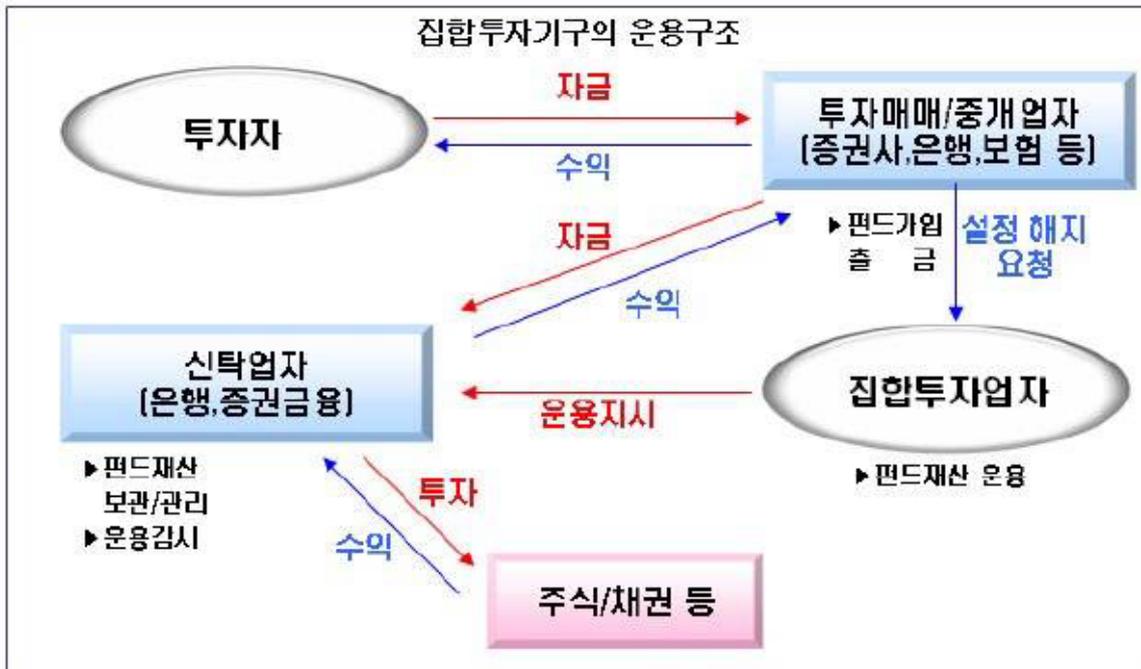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대한민국 | 37 | 0 | 0 | 0 | 0 | 0 | 0 | 0 | 0 | 5 | 16 | 58 |
| 비중 | 64 | 0 | 0 | 0 | 0 | 0 | 0 | 0 | 0 | 8 | 28 | 100 |
| 자산합계 | 37 | 0 | 0 | 0 | 0 | 0 | 0 | 0 | 0 | 5 | 16 | 58 |
| 비중 | 64 | 0 | 0 | 0 | 0 | 0 | 0 | 0 | 0 | 8 | 28 | 100 |

주)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모펀드 자산구성현황 20130428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 인터넷홈페이지 | www.yurieasset.co.kr |
| 회사연혁 | 1998.10 설립일 2001.10 국민연금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1 지방행정공제회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4.12 삼성생명, 정보통신부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5.01 우리은행 인덱스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6.02 매경-제로인 선정 '2005 펀드 대상' 특별상 2006.09 국민연금 액티브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04 연기금플 인덱스형, 주식형 위탁운용사 선정 2007.11 보험사 변액연금 인덱스형 운용사 선정 2008.07 국민연금 중소형주식형 운용사 선정 2009.01 유리TREX200 ETF 출시 |
| 자본금 | 153억 |
| 주요주주현황 | 부국증권(주) 99.05%/우리사주조합 0.92%/ 기타 0.03% |

| | |
|-------|--|
| 이해관계인 | 판매회사 중 부국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 요약대차대조표 |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구분 | 제15기 (2013. 03. 31) | 제14기 (2012.03.31) | 구분 | 제15기 ('12.4.1~13.3.31) | 제14기 ('11.4.1~12.3.31) |
| 자산총계 | 25,596 | 27,742 | 영업수익 | 6,524 | 7,312 |
| - 현금및예치금 | 19,952 | 20,971 | - 운용보수 | 3,704 | 4,190 |
| - 유가증권 | 447 | 1,164 | - 수수료수익 | 1,921 | 2,283 |
| - 대출채권 | 246 | 335 | - 유가증권평가및 처분이익 | 154 | 59 |
| - 유형자산 | 366 | 377 | - 이자수익 | 744 | 778 |
| - 무형자산 | 3,097 | 3,504 | - 배당금수익 | 0 | 2 |
| - 기타자산 | 1,488 | 1,392 | 영업비용 | 6,336 | 6,238 |

| 요약대차대조표 |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구분 | 제15기 (2013. 03. 31) | 제14기 (2012.03.31) | 구분 | 제15기 ('12.4.1~'13.3.31) | 제14기 ('11.4.1~'12.3.31) |
| 부채총계 | 267 | 827 | - 수수료비용 | 164 | 207 |
| - 예수부채 | 61 | 55 | - 유가증권평가및 처분손실 | 40 | 65 |
| - 기타부채 | 206 | 772 | - 판매비와관리비 | 6,132 | 5,967 |
| 자본총계 | 25,329 | 26,916 | 영업이익 | 187 | 1,074 |
| - 자본금 | 15,300 | 15,300 | 영업외수익 | 1 | 9 |
| - 자본잉여금 | 198 | 198 | 영업외비용 | 1,804 | 74 |
| - 이익잉여금 | 9,831 | 11,418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615) | 1,009 |
| 부채와자본총계 | 25,596 | 27,742 | 당기순이익 | (1,566) | 702 |

라. 운용자산 규모

(2013.6.28 기준, 단위: 억)

| 구분 | 증권 | | | | 부동산 | 특별 자산 | 재간접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형 | | | | | |
| 수탁고 | 3,522 | 4,889 | 1,431 | 7,412 | - | 109 | 243 | - | 17,60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개요

| | |
|----------|----------------------|
| 회사명 | 하나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 | |
|---------------------|---|
| | 연락처 : 1599-1111 |
| 인터넷홈페이지 | www.hanabank.com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1971.06 설립 1999.0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5.12 하나은행그룹 공식 출범 2007.02 3년 연속 한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상 수상 2008.10 2008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혁신 종합대상 수상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외환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다동 70 번지 한외빌딩 (연락처 : 02-6714-4642) |
| 홈페이지 | 없음 |
| 회사연혁 등 | 2003.04 설립 |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 | | | |
|---------------|--------------------------------------|--|-------------------------------------|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KIS채권평가(주) | NICE피앤아이(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연락처 : 02)399-335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연락처 : 02)3770-0400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연락처 : 02)739-3590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 www.koreabp.com 2000.05 설립 | www.bond.co.kr 2000.06 설립 | www.nicepni.com 2000.06 설립 |

| | | | |
|-----|--|--|--|
| 참조) | 2005.08 한국펀드평가와 단독 전략적 업무 제휴 2006.10 한국정보산업연합회/CRM협회대상 수상 2007.10 국민연금 부동산 지분증권 평가기관으로 선정 2008.03 KIBO A+Members 기업선정(기술보증기금) | 2003.11 업계최초로 KIS-Term Structure(개별기업별 이자율 기간구조) 발표 2005.03 업계 최초로 채권지수 보조지표로 평균Spread 정보를 추가 발표 2006.01 업계최초로 CP-Term Structure(개별기업별 CP 이자율 기간구조) 발표 (KIS-Net) 2006.07 KIS-Net Ver.2.0 발표 2008.01 ING자산운용의 채권 부문 성과요인 분석 모듈 구축 | 2002.01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 실시 2005.11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금융감독원) 2007.09 한국증권업협회 회원사 보유 비상장주식 외부평가 전문기관으로 단독 선정 2008.05 GIPS관련 성과평가 시스템 출시(N-GIPS v.1.0) |
|-----|--|--|--|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입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④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가)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3개월마다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 :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 2)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 : 우편으로 발송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 ⑤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yurieasset.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⑨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가) 선정시 고려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
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거래 유형(예 : 상장주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
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주1) 단, 유동성이 없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는 위의 상기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가증권의 매수 혹은 매도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할 수 있습
니다.

(나)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
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회사 경영관련 비용 /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마케팅비용 / 조사분석 세
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주1)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
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

다.

(다)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라) 중개사의 평가

- 각 운용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아래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합니다.
 1. 매매체결능력
 2. 중개수수료
 3. 정보제공의 정도
 4. 조사분석자료의 질
 5. 결제이행능력
- 각 운용부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합리적인 중개사선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약정배분기준

-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합니다.
 2. 약정 집행은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5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1. 평가결과에 따라 5개 이상의 중개사를 선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약정을 집행 합니다.
 2. 약정집행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집계 합니다.
 3.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특정회사에 전체약정의 30%이상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 운용부서는 매분기마다 제4조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 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 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용 어 | 내 용 |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금융 |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유리슈퍼뷰티증권투자신탁[주식]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들었고 권유받았음)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